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6.28.(화) 국무회의 시작 시(석간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6. 27.(월) 오후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호 (044-200-5910)
		담당자	서기관 허서영 (044-200-5920)

격렬비열도항,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28.(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제29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국가관리연안항인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게 된다.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청 함정들은 해역을 순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흥항 등 인근 항으로 피항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면서,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였고, 2021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번에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격렬비열도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서해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었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게 되었다.

또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함께 7월 5일(화)부터 시행되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임대가 불가능했던 액체화물의 관련 항만 시설 중 하역과 이송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민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라며,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 지방관리항의 개발·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로 하여 관리청을 구분하고, 토지·항만시설의 소유자에 시·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모법 개정**(‘22.1.5, ‘22.7.5 시행)
-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만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할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① (지방관리항만)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관리청으로 **전환**하고, 토지·항만시설 귀속주체에 시·도를 포함
*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서, 국가관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항은 시·도지사를 지칭(항만법 제2조제6호)
- ② (연안항) **격렬비열도항**(국가관리연안항)과 **진촌항**(지방관리연안항)을 항만으로 **신규 지정**하고, 비인항·신마항 명칭 변경(→마량진항·강진항)
- ③ (항만배후단지 분양·임대)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분양·임대 시 **제한경쟁, 수의계약** 때에도 사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④ (오염물질저장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항만시설에 추가
- ⑤ (항만시설 임대) 액체화물의 경우 **이송시설과 하역시설**(계류시설 포함)에 한해 **예외적 임대**가 가능토록 **요건 명확화**

참고

신규 연안항 지정 위치도

